



# 가정통신문

## 2024학년도 2학기 학급자치회 임원선거 및 학급자치회 운영 규정 안내



<http://www.gaon21.ms.kr/>

교훈 : 성실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담당 : 생활교육부

### 학부모님께

무더운 계절인 여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두루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학급자치회 임원선거 및 학급조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급자치회 규정 권고안을 준수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첫걸음인 2024학년도 2학기 학급자치회를 다음 일정에 따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번	일정	기한
1	학급자치회 후보 등록 안내	2024. 7. 19.(금)
2	후보 등록 및 공약계획 제출	2024. 8. 19.(월) ~ 2024. 8. 21.(수) 16:40
3	후보자 등록 공고	2024. 8. 22.(목)
4	학급자치회 선거일	2024. 8. 22.(목)
5	학급자치회 부서 조직	2024. 8. 22.(목)

### 학급자치회운영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를 공동체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 및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에 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각 학급자치회에 회장·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3조【후보 자격】**각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언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를 사랑하고 우애가 돈독하며 매사에 성실한 학생
4. 급우 간에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제4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① 회장·부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직접선거와 결과에 따라 시흥가온중학교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학급자치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선거 방법은 직접선거로 투표한다.
2. 각 선거(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각각 대표(회장과 부회장)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
3.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부회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 임명한다.

**제5조【임기】**①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 1학기로 한다.

② 1학기 회장과 부회장은 2학기에 선거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체】**① 회장·부회장에 선출된 자가 제 3조 각 호에 저촉되거나 전출,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밟아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장·부회장이 임명될 때에도 제4조 각호의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로 임명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학급자치회 회장의 직위】**회장은 그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의 의장 및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겸임 한다.

**제8조【학급자치회 회장의 의무】**① 학급의 대표로 교실생활 속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학급자치회를 운영하며 총괄한다.

②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의장을 마련하고 학급자치회의 결과를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③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전한 학급 풍토를 확립한다.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하며 학급 내 각 부서 활동을 지원하며 조율한다.

**제9조【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지위와 임무】**회장을 돋고 학급회의 대의원이 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부서 조직】**① 학급자치회 부서는 6개 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학급 실정에 따라 담임, 학생의 협의 하에 부서의 증감, 명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부서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단
2. 총무부
3. 학습부
4. 미화부
5. 환경부
6. 체육행사부

③ 주제 및 학급자치회 특성을 고려하여 찬반토론, 공청회, 세미나 등으로 변형하여 운영해도 무방하다.

**제11조【규정의 개정】**규정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 대의원회,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024. 7. 19.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